

일반대학원 마이크로전공 운영 지침

2026. 8. 14.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학원 학칙」 제24조의2에 따라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마이크로전공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마이크로전공”이란 대학원생의 융복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화된 전공지식이나 역량, 직무 등과 관련된 교과를 이수하도록 하는 최소 단위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개설 및 운영)

- ① 마이크로전공의 개설과 폐지, 변경 등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마이크로전공은 주관 학과(전공) 단독 또는 학과(전공) 간 연계를 통해 개설할 수 있으며, 주관 학과(전공)에서 대학원행정실로 신청한다.
- ③ 마이크로전공 개설 시 교육목표,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등은 마이크로전공 주관 학과(전공)에서 편성한다. 주관 학과(전공)는 교과목 관리, 신청 및 이수자 관리 등 전반적인 학사 업무를 담당한다.
- ④ 마이크로전공의 이수학점은 6학점 이상 12학점 이하로 편성한다.
- ⑤ 마이크로전공 교육과정은 이수학점의 2배 이내로 편성하되, 마이크로전공 간 교과목 중복을 지양하여 편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수학점의 2배를 초과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4조(신청 및 포기)

- ① 마이크로전공은 1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각 학위과정별로 마이크로전공을 최대 1개까지 신청 및 이수할 수 있다.
- ② 마이크로전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신청 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수 중인 마이크로전공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
- ③ 마이크로전공을 미이수한 학생이 졸업, 수료를 하는 경우 해당 마이크로전공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5조(이수)

- ① 마이크로전공 신청자는 각 마이크로전공의 교과과정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마이크로전공 신청 전에 해당 전공 교과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석사학위과정에서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가 박사학위과정에 진학한 경우 동일한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 ④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마이크로전공 교과목은 박사학위과정의 다른 마이크로전공에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마이크로전공의 다른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⑤ 학생 졸업 사정 시 마이크로전공 이수 여부를 사정하여 확정 처리한다.
- ⑥ 최종 이수 확정된 마이크로전공은 포기할 수 없다.
- ⑦ 마이크로전공 이수 사항은 성적증명서에 표기한다.

제6조(기타) 대학원 마이크로전공 운영에 관하여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준용)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하여 마이크로전공을 운영 할 수 있다.

부칙(2026. 8. 14. 제정)

이 지침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